진 주 시

공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655호 2019. 9. 24.(화)

규 칙

진주시 규칙 제733호 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2
진주시 규칙 제734호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9
진주시 규칙 제735호 진주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칙 폐지규칙…… 38

고 시

진주시 고시 제2019-79호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금호지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39
진주시 고시 제2019-80호 도로명주소 고시…… 45

공 고

진주시 공고 제2019-1774호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48
진주시 공고 제2019-1779호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3
진주시 공고 제2019-1821호「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94
진주시 공고 제2019-1827호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01

회 람										

발행 : 진주시 편집 - 공보관(749-8069, 행정 8069)

진 주 시 공 보

제655호

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일

2019년 9월 24일

진주시 규칙 제733호

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최종퇴청자”란 당직기관의 구분된 각 사무실 근무자 중 마지막으로 퇴청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2 중 “근무자에게는”을 “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숙직 근무자의 휴무)”를 “(당직 근무자의 휴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숙직”을 “시장은 숙직”으로, “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를 “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일직근무자(재택 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최종퇴청자의 임무) 각 사무실의 최종퇴청자는 사무실 잠금장치, 문단속 확인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일지를 기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① 시장은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발령 주관부서에서는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제2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1조 각 호에 규정된 비상근무 발령 상황이 종료된 경우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당직사령"을 "당직사령 또는 비상발령 주관부서장"으로, "각종"을 "문자서비스(SMS), 휴대전화, 유선전화 등 각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당직사령”을 각각 “당직사령 또는 비상발령 주관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 상 근 무 발 령 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사유 :

4. 대상 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위와 같이 비상근무를 발령함

진 주 시 장

진 주 시 공 보

제655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최종퇴청자”란 당직기관의 구분된 각 사무실 근무자 중 마지막으로 퇴청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2 (당직근무수당)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의2 (당직근무수당) -- 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
제5조 (숙직 근무자의 휴무) 숙직 근무자(재택 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① 시장은 숙직 -- 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일직근무자(재택 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진 주 시 공 보

제655호

<신 설>	제13조의2 (최종퇴청자의 임무) 각 사무실의 최종퇴청자는 사무실 잠금장치, 문단속 확인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일지를 기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 근무자의 긴급 사태시 임무) ①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 근무자의 긴급 사태시 임무) ①----------.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1. ---------- 행정과장-------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범죄사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총무과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1. ---------- 행정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① 시장은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발령 주관부서에서는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제2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1조 각 호에 규정된 비상근무 발령 상황이 종료된 경우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2조 (비상소집) ①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2. (생 략) 3.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제22조 (비상소집) ①당직사령 또는 비상발령 주관부서장---------- 문자서비스(SMS), 휴대전화, 유선전화 등 각종 ----------. ②당직사령 또는 비상발령 주관부서장----------. 1.·2. (현행과 같음) 3. 당직사령 또는 비상발령 주관부서장----------.
<신 설>	③ 시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진 주 시 공 보

제655호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일

2019년 9월 24일

진주시 규칙 제734호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 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조사”란 직접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통합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조사”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실시하거나 거래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시장은 납세지가 진주시인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가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조사 대상자) 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를 객관적 기

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1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도지사 관할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한다.

④ 시장은 일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5.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조사 대상자) ① 특별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 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조사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특정 세목만을 조사하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 규모 또는 탈세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만을 조사하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제58조에 따른 부과취소 및 변경에 따른 처리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 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중 중소기업
4.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
5.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 나목의 성실납세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조사 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통합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며,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2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 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기장·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 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현장 확인
2. 서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특정 세목이나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그 납세자의 일과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 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 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영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기간)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조사기간 연장 및 중지) ①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일시보관) ①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일시보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일시보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8호서식의 일시보관증과 규칙 별지 제89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 ① 시장은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30조(조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준비조사)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조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공무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3조(조사의 시작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규칙 별지 제426호 서식)를 납세

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조사기간 및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4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조사진행 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자가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밝혀낸 모든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85조 및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영 제5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국세 또는 과세 관할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세목별 세무조사 결과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0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시장은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증표를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공무원은「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대외적으로 세무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납세자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예의바른 자세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현장에 도착하면 조사 착수상황, 특이사항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공무원 증표를 제시하고 납세자권리 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범칙사건조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일시보관 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

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라.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마.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결정 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 적출내용 등 조사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마.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관						
영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						

○ 붙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직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

진 주 시 공 보

제655호

[별지 제2호서식]

압수·영치목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작 성 자 : (부서) (성명) (인) (전화)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 ) 기 타 ( )	

진 주 시 장 귀하

진 주 시 공 보

제655호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첨부 서류만으로 입증 및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법인장부 등 첨부 서류』에 있는 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방법 : 제출 서류는 전산파일(계정별 원장, 급여대장은 엑셀 파일, 나머지는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방문·우편 제출도 가능)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내실 곳

- 주 소 : (우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 세무과
- 이메일 :

※ 문의 전화 :

제출 서류 목록

1. 법인 현황

2. 법인 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현황

3. 법인장부 등 첨부 서류

진 주 시 공 보

제655호

1. 법 인 현 황

	법인명	①법 인 등 록 번 호	본 점 소재지	자본금 (억원)	대표자	법 인 설립일	사업자 등록일	사업자 등 록 번 호	업태	업종	전화 번호
본 점											

	②사업 장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 호	③최초 설치일	④사업자 등록일	⑤사업자 등록번호	⑥지점 등기일	⑦사업장 현황			
								소유 형태	토지 면적	건물 면적	근무 인원
진 주 시 내 사 업 장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 법인현황 작성요령

① 법 인 등 록 번 호 : 법인별 고유등록번호(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등록번호)
② 사 업 장 명 : 진주시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③ 최 초 설 치 일 :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연월일 기재
④ 사 업 자 등 록 일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
⑤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⑥ 지 점 등 기 일 : 지점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⑦ 사 업 장 현 황
- 소유형태(자가·임차) 해당란 ○표
- 토지면적·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 기재(전용 + 공용)
- 근무인원 : 해당 사업장의 실 근무 인원(파견인원 포함)

2. 법인 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현황

계정과목	소 유 자 산 내 역 (부동산 소재지, 차량번호 등)	취득일자	장부가액 (원)	사용용도	비 고

※ 진주시에 소재하는 법인 소유자산을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해당 계정과목별·취득일자별로 구분 작성

3. 법인장부 등 첨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부속서류 포함)

☐ 결산서

☐ 계정별 원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포함)

☐ 급여대장

☐ 부동산관련 매매계약서, 공사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 참고 사항

○ 해당 자료를 조사대상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 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 주 시 공 보

제655호

진주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일

2019년 9월 24일

진주시 규칙 제735호

진주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칙 폐지규칙

진주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진주시 고시 제2019-79호

진주도시계획시설 (공원:금호지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30호('2010.01.14.)로 시설 결정된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금호지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공원관리과(T.749-87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09월 09일

진 주 시 장

1. 명칭 : 진주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 금호지공원)

2.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금호지공원 일원)

3. 면적 : 639,193㎡

4. 지형도면 등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 지형도면 등 이와 관련된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공원관리과(T.055-749-87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 임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부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지형도면 1부 : 게재생략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 : 금호지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금호지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금호지공원	근린공원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산169번지 금호저수지 일원	639,193	-	639,193	1986.3.06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조성계획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규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639,193**		**639,193**	**680.44**	**-261**	**419.44**	**849.59**	**-261**	**588.59**	-
시설지 소계	**96,947**	**감 9043**	**87,904**	**680.44**	**-261**	**419.44**	**849.59**	**-261**	**588.59**	시설률 13.8%
도로및광장	23,057	감 225	22,832							3.6
조경시설	28,801	증 3842	32,643	120		120	234.66		234.66	5.1
휴양시설	14,965	감7,544	7,421							1.2
유희시설	402	증 5279	5,681							0.9
운동시설	13,012	감 8228	4,784							0.8
교양시설	4,680	증 5147	9,827							1.5
편익시설	11,319	감6,603	4,716	459.44	-160	299.44	513.93	-160	353.93	0.7
관리시설	711	감 711		101	-101		101	-101		
녹지 및 기타	542,246	증 9043	551,289							녹지율 86.2%

나. 공원 세부시설 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조	수량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공원 면 적				636,193		639,193	680.44	-261	419.44	849.59	-261	588.59			
시설지 면 적				96,947	-9,043	87,904	680.44	-261	419.44	849.59	-261	588.59			
1. 도로 및 광장		1-1	도로	18,109	-56	18,053									
	기정	1-2	만남의 광장	2,168	-2,168										zone1
	폐지		만남의 광장												
	신설	1-2	진입광장		1,063	1,063									zone2
		1-3	금호광장	1,560		1,560									zone1
	기정	1-4	달빛광장	822	-822										zone2
	폐지		달빛광장												
	기정	1-5	백합광장	398		398									zone3
	변경	1-4	백합광장												
	신설	1-5	다목적광장		1,758	1,758									zone1
	소계			23,057	-225	22,832									
2. 조경시설		2-1	묘포장	7,115		7,115	120		120	234.66		234.66	철근 콘크리트		2층
		2-2	야생화 숲	3,190		3,190									zone3
		2-3	淨化 숲	2,932		2,932									zone3
	기정	2-4	조경녹지①	1,452	7,196	8,648									zone1
	변경	2-4	조경녹지①												
		2-5	조경녹지②	983		983									zone1
	기정	2-6	조경녹지③	3,115	-3,115										zone2
	폐지		조경녹지③												
	기정	2-7	조경녹지④	627	-627										zone2
	폐지		조경녹지④												
	기정	2-8	조경녹지⑤	833		833									zone3
	변경	2-6	조경녹지③												
	기정	2-9	조경녹지⑥	1,643		1,643									zone3
	변경	2-7	조경녹지④												
	기정	2-10	조경녹지⑦	1,854		1,854									
	변경	2-8	조경녹지⑤												
	기정	2-11	정자	17		17									
	변경	2-9													
	기정	2-12	조경녹지⑥	438		438									
	변경	2-10													
	기정	2-13	잔디광장	4,168	-1,328	2,840									zone1
	변경	2-11													zone2
	기정	2-14	데크로드	434		434									
	변경	2-12													
	신설	2-13	조경녹지⑦		1,716	1,716									zone2
	소계			28,801	3,842	32,643	120		120	234.66		234.66			

진 주 시 공 보

제655호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조	수량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3. 휴양시설		3-1	피크닉장 ①	5,118		5,118									zone2
	기정	3-2	피크닉장 ②	7,890	-7,890										zone2
	폐지		피크닉장 ②												
	기정	3-3	야영장	1,845	-1,845										zone2
	폐지		야영장												
	기정	3-4	휴게공간 ①	22		22									
	변경	3-2													
	기정	3-5	휴게공간 ②	90		90									
	변경	3-3	휴게공간 ②												
	신설	3-4	휴게공간 ③		726	726									zone2
	신설	3-5	휴게공간 ④		913	913									zone1
	신설	3-6	휴게공간 ⑤		552	552									zone2
	소계			14,965	-7,544	7,421									
4. 유희시설	기정	4-1	용아나루	402	-402										zone2
	폐지		용아나루												
	신설	4-1	생태놀이터		5681	5681									zone2
	소계			402	5,279	5,681									
5. 운동시설	기정	5-1	체력단련장 ②	1,593		1,593									
	변경	5-1	체력단련장												
		5-2	게이트볼장	1,251		1,251								1면	zone1
	기정	5-3	농구장	1,922	-1,922									1면	zone2
	폐지		농구장												
	기정	5-4	테니스장	1,944	-1,944								clay decofurt	2면	zone2
	폐지		테니스장												
	기정	5-5	족구장	2,540	-2,540									4면	zone2
	폐지		족구장												
	기정	5-6	다목적 운동장①	3,037	-1,822	1,215									zone1
	변경	5-3	다목적 운동장①												
	기정	5-7	다목적 운동장②	725		725									zone3
	변경	5-4	다목적 운동장②												
	소계			13,012	-8,228	4,784									

진 주 시 공 보

제655호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조	수량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6. 교양시설	기정	6-1	수변무대	867	-867										zone1
	폐지		수변무대												
	기정	6-2	금하 하오경 음악비	175		175									
	변경	6-1	금하 하오경 음악비												
	기정	6-3	학고 정선교 선상 우국시비	105		105									
	변경	6-2	학고 정선교 선상 우국시비												
	기정	6-4	수생태 체험장	1,106	6,014	7,120							목재데크		zone2
	변경	6-3	수생태 체험장												
	기정	6-5	수생태 식물원	1,363		1,363									zone3
	변경	6-4	수생태 식물원												
	기정	6-6	연꽃지	1,064		1,064									zone3
	변경	6-5	연꽃지												
	소계			4,680	5,147	9,827									
7. 편익시설	기정	7-1	화장실①	584	-405	179	65		65	65		65	철근 콘크리트		zone1
	변경	7-1	화장실①												
	기정	7-2	화장실②	1223	-1223		160	-160		160	-160		철근 콘크리트		zone2
	폐지		화장실②												
	기정	7-3	화장실③	30		30	13		13	13		13			zone3
	변경	7-2	화장실②												
	기정	7-4	화장실④	30		30	13		13	13		13			
	변경	7-3	화장실③												
	신설	7-4	화장실④		37	37									zone2
	기정	7-5	매점	841	-581	260	50		50	50		50	철골조		zone1
	변경		매점												
	기정	7-6	주차장①	2500	-198	2302							아스콘 포장		zone1
	변경		주차장①												
	기정	7-7	주차장②	1246	-1246								아스콘 포장		zone2
	폐지		주차장②												
	기정	7-8	주차장③	975		975							아스콘 포장		zone3
	변경	7-7	주차장②												
	기정	7-9	휴게쉼터	3890	-2987	903	158.44		158.44	212.93		212.93			
	변경	7-8	휴게쉼터												
	소계			11,319	-6,603	4,716	459.44	-160	299.44	513.93	-160	353.93			
8.관리시설	기정	8-1	배수시설	450	-450		16	-16		16	-16		철근 콘크리트		zone1
	폐지														
	기정	8-2	관리사무소	261	-261		85	-85		85	-85		철근 콘크리트		zone2
	폐지														
	소계			711	-711		101	-101		101	-101				
기타		9	녹지	542,246	9,043	551,289									
			고사분수												

진 주 시 공 보

제655호

다. 공원내 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총계				4,159.8	18,109.0				
변경					4,240.0	18,053.0				
	소로	3	1	7.0	1,171.4	8,200.0	진입로	공원북측경계	공원남측경계	
기정	"	3	2	7.0	105.1	736.0	진입로	공원북측경계	소로3-1	
변경	"	3	2	6.0~7.0	124.0	807.0	연결로	공원서측경계	소로3-1	
기정	"	3	3	7.0	151.7	1,062.0	연결로	소로3-8	소로3-8	
변경	"	3	3	2.0~4.0	144.0	480.0	연결로	소로3-1	3-6휴게공간⑤	
	"	3	4	4.5	106.2	478.0	진입로	공원남측경계	공원남측경계	
	"	3	5	3.0	404.7	1,214.0	산책로	소로3-1	공원북측경계	
	"	3	6	3.0	448.3	1,345.0	산책로	소로3-1	원형보존녹지	
	"	3	7	3.0	354.0	1,062.0	산책로	소로3-1	2-1묘포장	
기정	"	3	8	3.0	251.0	753.0	산책로	소로3-3	원형보존녹지	
변경	"	3	8	4.0~10.0	120.0	599.0	연결로	소로3-1	7-4화장실④	
	"	3	9	3.0	905.3	2,716.0	산책로	소로3-2	2-10조경녹지⑥	
기정	"	3	10	3.0	100.0	300.0	연결로	소로3-9	7-9휴게쉼터	
변경	"	3	10	3.0	89.0	267.0	연결로	7-8 휴게쉼터	7-8 휴게쉼터	
	"	3	11	1.5	162.0	243.0	진입로	공원남측경계	공원남측경계	
신설	"	3	12	3	211.0	642	연결로	소로3-3	3-4휴게공간③	

진주시 고시 제2019-8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11.

진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일사로 315-69 외 10건

부여 8건 -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참조
폐지 3건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749-559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제655호

진주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남산리 905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일사로 315-69	20190911	건물번호부여	20090702	행정구역명(일반성면+사봉면) 반영	
2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413-6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829-1	20190911	건물번호부여	20091130	구국도2호선 일부로, 진주시의 동부지역을 지나는 도로	
3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860-16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로 416 (판문동)	20190911	건물번호부여	20091130	행정구역명(판문동)을 이용하여 판문로로 명명	
4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67-6	경상남도 진주시 대밭골로39번길 7-48 (충무공동)	20190911	건물번호부여	20120601	대밭골로 기점으로부터 약 390미터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곡리 588-18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627번길 2-3	20190911	건물번호부여	20091130	동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53-43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31번길 3-1	20190911	건물번호부여	20091130	소문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179-4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신당길 299-1	20190911	건물번호부여	20091130	행정구역명(집현면 신당리)를 이용하여 신당길로 명명	
8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월암리 98-5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456번길 32	20190911	건물번호부여	20091130	월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진주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NO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폐지일	비고
1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627번길 4	건물번호폐지	20190911	
2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31번길 3-1	건물번호폐지	20190911	
3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456번길 32	건물번호폐지	20190911	

진 주 시 공 보

제655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19-1774호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반영

「여성발전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나. 시설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 및 변상규정 행안부 방침 시달

다. 다수의 시민에게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규정 필요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 용어로 정비

3. 주요내용

【조례】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반영

「여성발전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나. 시설 사용허가나 허가 제한 등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

다. 교육 수강료 면제와 감경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항목으로 구분

라. 시설 사용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및 변상규정을 두지 못하도록 한 행안부 방침 적용

【시행규칙】

가. 시설사용자와 교육수강 신청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나. 강사의 자격 기준과 지원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다. 강사의 임무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 추가

라. 수강생 우선모집 대상 범위를 20% 이내로 하고 수강생 선정방식을 접수순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6일까지 진주시장(참조: 능력개발원장)에게 다음 방법 및 별지 서식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방법

1) 우 편 : 진주시 삼계로 430 능력개발원 / 우편번호 52848

2) 팩 스 : 055-749-5959

3) 인터넷 : 진주시 홈페이지 → 자주 찾는 서비스 내 자치법규 → 자치법규입법예고 → 의견달기

4) 직접방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주소, 전화번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능력개발원 능력개발팀(전화 055-749-68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수정안)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2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시장”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문화강좌, 세미나,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행위”를 “사용하거나 개발원 및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을 이용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하거나”를 “사용하는 자와”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를 “위한 예산과”로, “관련시설·인력”을 “인력”으로, “통합 운용”을 “통합하여 운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피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인사를 강사로”를 “교육생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부 전문 강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위촉된 강사”를 “따른 위촉강사”로 한다.

진 주 시 공 보

제655호

제8조 단서 중 “시장이 필요에 따라 사용 및 이용시간”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를 “우선으로 허가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청접수의 순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개시 14일 전까지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시설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사용목적이나 행사내용이”를 “시장은”으로,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리상”을 “관리에”로, “인정하는”을 “판단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소되었을”을 “취소된 적이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물 등 사용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및 수강료를 체납”을 “또는 수강료를 미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0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7. 사용허가 후에 국가 또는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나 사용중지 시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12조제1항 중 “사용 및 이용하는”을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시간 또는 교육시간 중 일부만 사용 또는”을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하거나 교육시간을 일부만”으로, “그 사용시간 또는 교육시간 전부를 사용 또는”을 “전부를 사용하거나”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면할”을 “면제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 수강료는 연간 1인 1과목으로 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독립유공자 및”을 “독립유공자,”로, “또는”을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가유공자 및”을 “국가유공자,”로, “또는”을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차상위 계층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수강료는 연간 1인 1과목으로 한정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다자녀 가정
3.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제14조제1항 중 “사용일 전날까지 미리 내야”를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밖의”를 “밖에”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을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정에 따라”를 “사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에”를 “6일전부터 전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않을”을 “아니할”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홍보물 게첨)”을 “(홍보물 게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자가"를 "사용자는"으로, "게첨"을 "게시"로, "게시할"을 "할"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책임 및 변상) 사용자는 시설물 또는 설비·장비 등의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나.

제19조 중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7조 관련)"을 "(제12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진주시 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여성들의 자질·잠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취업지원 등을 위한 진주시 능력개발원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1항----------.
제2조(설치기준) 시장은 진주시 능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과 진주시 능력개발원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시민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설치기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문화강좌, 세미나,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사용하거나 개발원 및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을 이용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개발원 및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 사용하는 자와 ---------- 사람을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사무실 및 관련시설·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개발원 본관이나 그 밖의 시설을 임대하거나 통합 운용할 수 있다.	④ ---------- 위한 예산과 ---------- 인력---------- 통합하여 운영---.
제7조(강사) ① 시장은 개발원 및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피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7조(강사) ① ---------- 교육생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부 전문 강사를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와 초빙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따른 위촉강사----------
제8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사용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시간) ----------.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시간----------.

제9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① ---------- ----------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② ---------- ---------- 우선으로 허가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청접수의 순으로 ----------.
1. 국가·시 주관 행사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개시 14일 전까지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시설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이나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 ----------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 관리에 ---------- 판단되는 ---
2.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 취소된 적이 있는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등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 사용허가 ----------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체납한 경우	5. ---------- 또는 수강료를 미납---
6. 제10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6.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7. 국가, 시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7. 사용허가 후에 국가 또는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나 제7호에 해당된 때에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나 사용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나 사용중지 시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와 개발원 및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2가 정하는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 사용하는 ----------.
②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시간 또는 교육시간 중 일부만 사용 또는 수강한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 또는 교육시간 전부를 사용 또는 수강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② ----------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하거나 교육시간을 일부만 ---------- 전부를 사용하거나 ----------.
제13조(사용료 등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 감면) ① ----------.
1. 국가 및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1. --- 또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면제할 -----. 이 경우 감면대상 수강료는 연간 1인 1과목으로 한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 --------- 및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 국가유공자, ------- 및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차상위 계층 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실직자(가족을 포함한다)의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7. 차상위 계층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삭 제>
9.「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다자녀 가정	<삭 제>
10.「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	<삭 제>
1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삭 제>
<신 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수강료는 연간 1인 1과목으로 한정한다.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다자녀 가정 3.「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등 납부·반환) ①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1항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사용일 전날까지 미리 내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 납부·반환) ① ----------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
②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 ---------- 밖에 ----------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
2.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우나 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 사정으로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사용 예정일 전에 사용의 취소를 신고한 경우	5. --------- 6일전부터 전일까지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강의 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7. ---------- 아니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 등의 홍보물을 시설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17조(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는 ---------- 게시---------- 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변상 및 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설비·장비 등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자료·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 비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제15조 위반이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관계 법령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2] <제정 2012.3.26>

사용료 및 수강료(제7조 관련)

1. 사 용 료

구 분		단 위	이 용 료	비 고
다목적강당		오전 오후 야간	80,000원 90,000원 100,000원	※시간기준 오전 09:00~12:00 (3시간) 오후 13:00~17:00 (4시간) 야간 18:00~22:00 (4시간) 토,일,공휴일은 평일의 20%가산
동부센터강당		오전 오후 야간	30,000원 40,000원 50,000원	
회의실		2시간	20,000원	
전시실		1일	50,000원	
부시	냉.난방시설	1시간	30,000원	※ 1회 초과시 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프로젝트	2시간	20,000원	
	속그랜드 피아노	2시간	20,000원	
	철음향시설	2시간	20,000원	
	조명시설	2시간	30,000원	
	무선(핀)마이크	2시간	20,000원	※추가분 1채널당 10,000원 가산

2. 수 강 료

구 분	수강 기준	월 액	비 고
가. 기술.취업교육	과목당	15,000원	재료비는 본인 부담
나. 취미교육	〃	15,000원	
다. 교양교육	〃	15,000원	

제18조(책임 및 변상) 사용자는 시설물 또는 설비·장비 등의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9조(준용)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

[별표 2] <제정 2012.3.26>

사용료 및 수강료(제12조 관련)

1. 사 용 료

구 분		단 위	이 용 료	비 고
다목적강당		오전 오후 야간	80,000원 90,000원 100,000원	※시간기준 오전 09:00~12:00 (3시간) 오후 13:00~17:00 (4시간) 야간 18:00~22:00 (4시간) 토,일,공휴일은 평일의 20%가산
동부센터강당		오전 오후 야간	30,000원 40,000원 50,000원	
회의실		2시간	20,000원	
전시실		1일	50,000원	
부시	냉.난방시설	1시간	30,000원	※ 1회 초과시 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프로젝트	2시간	20,000원	
	속그랜드 피아노	2시간	20,000원	
	철음향시설	2시간	20,000원	
	조명시설	2시간	30,000원	
	무선(핀)마이크	2시간	20,000원	※추가분 1채널당 10,000원 가산

2. 수 강 료

구 분	수강 기준	월 액	비 고
가. 기술.취업교육	과목당	15,000원	재료비는 본인 부담
나. 취미교육	〃	15,000원	
다. 교양교육	〃	15,000원	

진주시 규칙 제 호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용자의 범위) 시설 사용신청은 직장·단체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소속 구성원이 할 수 있고, 교육 수강신청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할 수 있다.

다.

제3조제1항 중 “따라 강사”를 “따른 강사”로,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을 “때에는”으로, “위촉시 위촉기간을 정한다”를 “기간을 정하여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과정별 강사”를 “강사”로, “자격을 한 가지 이상 갖추어야”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분야”를 “관련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업훈련교사로서 해당분야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자격을 갖추고 강사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강사에 지

원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격증"을 "자격증 사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명서류"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최종학력증명서

5. 수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건강진단서(결핵 및 전염성 질환 없음이 표기되어야 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3호 중 "교육"을 "교육의 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 중 "연구활동"을 "지속적인 연구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수강생 동아리 활동지원

6. 수강생 안전 유지

2)
제5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3조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될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변경) 사용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

용(변경)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감면대상자 정보를 첨부할 수 있을 때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3.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우선하여 접수 순으로 모집 할"을 "수강신청자를 모집정원의 20% 범위에서 추첨하여 우선모집 수강생으로 선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립유공자 및"을 "독립유공자,"로, "또는"을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유공자 및"을 "국가유공자,"로, "또는"을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차상위 계층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8. 기술창업관련 과정 신청자로서 관련과목 필기시험 합격자

1)

제8조의 제목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대시설 사용신청자에 대해서는"을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신청자에게"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신청자 중에서 교육 수강생을 선정할 때에는 컴퓨터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강생이 교육 시간의 70% 이상을 수료했을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수의 시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수료자가 수강한 같은 과목을 계속 신청하거나 수강생으로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강생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4.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수강료”를 “수강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4조2항제1호”를 “제14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4조2항제5호”를 “제14조제2항제5호”로, “위약금”을 “사용료에서 위약금”으로, “공제 후 전액”을 “공제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4조2항제6호”를 “제14조제2항제6호”로, “전액반환”을 “전액 반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4조2항제7호”를 “제14조제2항제7호”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이용자의 범위) 교육수강생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한다.	제2조(사용자의 범위) 시설 사용신청은 직장·단체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소속 구성원이 할 수 있고, 교육 수강신청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할 수 있다.
제3조(강사 위촉 등) ① 시장은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위촉시 위촉기간을 정한다.	제3조(강사 위촉 등) ① ---------- ---------- ---------- 따른 강사---------- 때에는 ---------- ---------- 기간을 정하여 위촉한다.
②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한 가지 이상 갖추어야 한다.	② 강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
1.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1. 관련분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직업훈련교사	3. 직업훈련교사로서 해당분야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자격을 갖추고 강사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강사에 지원할 때에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분야 자격증	2. ------ 자격증 사본

3. 해당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3. ----------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최종학력증명서
<신 설>	5. 수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6. 건강진단서(결핵 및 전염성 질환 없음이 표기되어야 함)
<신 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강사의 임무) 강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강사의 임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교육을 위한 주요사업 및 행사 참여	3. 교육의 발전----------
4. 교육효과,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4. ---------- 지속적인 연구활동
5. 동아리 등 활동지원	5.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수강생 동아리 활동지원
<신 설>	6. 수강생 안전 유지
제5조(강사 위촉의 해제)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강사 위촉의 해제)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 설>	7. 제3조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될 경우

<신 설>	8.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6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① ---------- ---------- -------- 해당하는 ---------- ----.
1. 강당, 회의실, 강의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변경) 사용신청서	1. ---------- ----------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2. 각종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신청서	2. ---------- 별지 제2호서식----------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수강료 면제(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조례 제1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 시「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감면대상자 정보를 첨부할 수 있을 때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제7조(수강생 우선모집)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접수순으로 모집 할 수 있다.	제7조(수강생 우선모집) ---------- ---------- 수강신청자를 모집정원의 20% 범위에서 추첨하여 우선모집 수강생으로 선정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 -------- 및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 및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차상위 계층 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인정하는 실직자(가족을 포함한다)의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7. 차상위 계층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신 설>	8. 기술창업관련 과정 신청자로서 관련과목 필기시험 합격자
제8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당, 회의실, 강의실 및 부대시설 사용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용일시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제8조(사용허가 등) ① ----------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신청자에게 -- 별지 제1호서식----------.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종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접수순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동일과목을 계속하여 수강신청을 할 경우 시장은 제한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신청자 중에서 교육 수강생을 선정할 때에는 컴퓨터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각종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증을 발급하며,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강생이 교육 시간의 70% 이상을 수료했을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다수의 시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수료자가 수강한 같은 과목을 계속 신청하거나 수강생으로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강생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반환 절차) ① 조례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시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반환 절차) ① ---------- ---------- ---------- ---------- ------- 별지 제5호서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 제14조제2항제6호와 제7호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범위) 조례 제14조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범위) --- 제14조제2항---------- 수강료의 ----------.
1. 조례 제14조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할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1. --- 제14조제2항제1호---------- ----------
2. 조례 제14조2항제5호에 해당할 때 : 위약금 100분의 10을 공제 후 전액 반환	2. --- 제14조제2항제5호---------- 사용료에서 위약금 -- 공제한 후 -----
3. 조례 제14조2항제6호에 해당할 때 : 수강료 전액반환	3. --- 제14조제2항제6호---------- - 전액 반환
4. 조례 제14조2항제7호에 해당할 때 :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반환	4. --- 제14조제2항제7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19 - 1779호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2. 개정의 이유

가. 영구임대주택의 공용전기요금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비를 지원하여 보안등, 승강기, 부대복리시설의 냉난방 등 편의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 필요

나. 이웃 간 무관심과 소통 부재로 주거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 층간소음, 간접흡연, 반려동물, 주차문제 등의 분쟁과 갈등이 급증하고 악화되어 시민의 삶의 질 저하

다. 기존 조례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동주택단지의 규모(세대수) 별로 최대지원 금액을 명확히 규정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안 제14조제2항제2호)

-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이웃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조성

나.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비 지원 (안 제14조제2항제3호)

- 기존에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에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구임대주택의 공용전기료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 명시(안 제15조, 별표 신설)

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규정 미비점 보완 수정(안 제16조부터 제16조의6)

마.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및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안 제29조)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지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확산하고 장려를 위하여 공모사업에 참가한 공동주택을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로 선정하고 포상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진주시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별지서식1)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장(주택경관과) 우편번호 52789

2) 팩 스 : 055-749-5579

3) E-mail : lsw4627@korea.kr

4)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055-749-8836)으로 문의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수정안)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1779호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임대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가.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나.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보수

다.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보수

라.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단, 개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마.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유지・보수

바.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사.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아.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자.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차.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카. 옥상방수공사

타. 외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

파.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하.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마.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 그 밖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용전기료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비

제14조제2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제1호”로, “관리주체는”을 “공동주택은”으로, “날로”를 “다음 해”로, **“보조금”을 “같은 호의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호 파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동주택의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은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호 파목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심의 등)”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5.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단체 등이 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6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

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제5장의 제목 “보칙”을 “**공동체 활성화 우수단지의** 선정 등”으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에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과**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심의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④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상패의 수여와 우수단지 인증동판 수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2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30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금액(제15조 관련)

❑ 공동주택 규모별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최대 지원금

구 분	지 원 금 액	비 고
150세대 미만	2천만원 이하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천만원 이하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4천만원 이하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4천5백만원 이하	
1천세대 이상	5천만원 이하	

진 주 시 공 보

제655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13호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적용한다.	제13조(적용범위) ---------- 공동주택---------. 다만, 제14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제14조(보조금의 지원) ① ----------**전부 또는 일부**----	제14조(보조금의 지원) ① ----------**일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1.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가.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나.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보수 다.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보수 라.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단, 개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마.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유지·보수 바.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사.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아.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자.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차.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카. 옥상방수공사 타. 외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 파.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하.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2.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보수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 마.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 그 밖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보수	3.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용전기료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비
4.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단, 개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삭 제>
5.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유지·보수	<삭 제>
6.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삭 제>
7.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삭 제>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삭 제>
9.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삭 제>
10.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삭 제>
11. 옥상방수공사	<삭 제>

12. 외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단, 도장공사는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한한다}	<삭 제>
13.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삭 제>
14.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제2항제1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 다음 해---------**같은 호의 보조금을**----------. 다만,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호 파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원기준) 지원금은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제14조제2항제13호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비용은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기준) 공동주택의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제14조제2항제1호 따른 지원금은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호 파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심의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신 설>	5.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삭 제>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삭 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삭 제>

<신 설>	제16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의4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1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16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6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제5장 보칙	제5장 **공동주택 활성화 우수단지의_** 선정 등
<신 설>	제29조(공동체 활성화 및 우수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과**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심의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④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상패의 수여와 우수단지 인증동판 수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 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2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29조 ~ 제31조 (생 략)	제30조 ~ 제32조 (현행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6장 보칙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일부를 주택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신설 2015.12.29.>

이 조례 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19 - 1821호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2. 제정의 이유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지식기반형 산업 및 도심형 첨단업종을 집중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진주지식산업센터의 기능(안 제3조)

다.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진주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진주지식산업센터 경비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진주시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별지서식1)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장(기업통상과장)
우편번호 52789

2) 팩스 : 055-749-5229

3) E-mail : lawheart@korea.kr

4)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기업통상과 산단관리팀(☎055-749-814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수정안)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가 설립한 진주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 입주) ① 입주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경비지원) 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 부터 받은 수익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능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받은 이용료와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 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준용)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 설 사 용 료(제8조)

(단위 : 원)

시 설 별	시 간 당	냉방공급 (6~9월)	난방공급 (11~2월)
대회의실	25,000	3,000	3,000
미팅룸(40㎡, 43㎡)	15,000	3,000	3,000
미팅룸(32㎡, 35㎡)	10,000	3,000	3,000
미팅룸(25㎡)	5,000	3,000	3,000

※ 사용료 계산

-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19-1827호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가.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에 단체보험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추가하여 직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

나.「20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변경에 따라 직원종합건강검진비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외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추가(안 제7조)**

○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진주시장에게(참조 : 행정과장)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팩스, 우편,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행정과, TEL : 055-749-8313, FAX : 055-749-5129, 이메일 : moon0610@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호~ 15호를 제7호~ 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진 주 시 공 보

제655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6. ~ 15. (생 략)	7 ~ 16. (현행 제6. ~ 15.와 같음)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